

사무분장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행정업무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행정본부

제2조(교목처) 교목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예배
 - 학생채플
 - 채플 설교자 및 인도자의 선정과 배정 (2017.1.26.개정)
 - 각종 행사의 예배주관
 - 특별 신앙강좌
2. 교회실습
 - 학부 및 대학원 신학생의 교회실습 관련 업무 (2017.1.26.개정)
3. 신앙상담
 - 교직원 및 학생 신앙상담
 - 교목실 및 채플실 관리 업무 (2017.1.26.개정)
4. 학생생활 (2018.8.24.개정)
 - 생활관 관련 제반 업무
 - 기숙사생 선발
 - 입, 퇴사에 관한 업무
 - 기숙사생 방 배정
 - 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
 - 기숙사 비품 보관 및 관리
 - 기숙사생 생활상담
 - 사생 벌점에 관한 사항
 - 사생 점호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사항
 - 생활관위원회 업무
 - 학생식당 관련 제반 업무
5. 교계 및 지역교회 대외협력 홍보 (2020.3.11.개정)
 - 총회 및 동문회 후원 관련 업무

-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업무

제3조(기획조정처) 기획조정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(2012.2.16.개정),(2016.3.14.개정),(2016.9.7.개정),(2017.8.31.개정)

1. 기획(관련 위원회로 업무 이관) (2022.5.31.개정)

-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-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조정 및 관리
- 재정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2016.9.7.신설)
- 행정기구의 설치와 직제 조정
-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(2016.9.7.신설)
- 제규정 제정 및 정리
- 규정집 발간 및 배포
-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
- 대학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, 교육통계 산출 및 보고

(2016.9.7.개정)

2. 삭제 (2016.2.29.개정)

3. 국제교류 (디아코니아사업단으로 이관) (2016.3.14.개정),(2022.5.31.개정)

- 외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및 협정 체결
- 외국 대학의 학술정보의 수립 및 교환
- 교원 및 학생의 국외연수 관리
- 기타 국제 협력에 관한 업무

4. 삭제 (2016.2.29.)

5. 삭제 (2016.2.29.)

6. 감사업무 (감사실로 이관. 2020.3.11.개정)

-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·조정
- 본부행정부서, 각 부속·부설기관에 대한 감사
- 감사결과의 처리
- 법인 감사 지원
- 기타 각종 감사 관련 업무

7. 예산(총무처로 업무 이관) (2016.9.7.신설),(2022.5.31.개정)

- 예산편성 관련 업무 및 예산자문위원회 업무
(평생교육원, 국제교육원, 인성교육원 포함) (2016.3.14.개정),(2016.9.7.신설)
- 수입·지출 등 예산 통제 및 조정 (2016.9.7.신설)
- 추가경정 예산 편성 (2016.9.7.신설)
- 국고 등 외부 보조금 관리 (2016.9.7.신설)
- 학생 등록금 조정 및 각종 수수료 책정

- 급여 및 제 수당 책정
- 8. 평가(관련 위원회로 업무 이관 및 TF팀) (2016.9.7.신설),(2022.5.31.)
 - 대학평가 관련 업무
 - 조직(부서) 평가에 관한 사항
 -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 -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의 사후 평가
 - 교육수요자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이행관리 업무
- 9. 행정(관련 위원회로 업무 이관) (2016.9.7.신설),(2022.5.31.개정)
 - 행정체제 구축 및 개선
 - 전자행정시스템 및 행정서식 관리
 - 학교 행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10. 조정 (2016.9.7.신설),(2020.3.11.개정)
 -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및 조정 (2016.3.14.신설)
 - 교직원 임용계획 조정
 - 부처간 협업 및 갈등 조정 업무
 - 부처간 예산 조정
 - 교직원 보직임면 (2020.3.11.신설)
- 11. 위원회(관련 위원회로 업무 이관) (2016.9.7.신설),(2022.5.31.개정)
 - 위원회 설·폐에 대한 제안
 - 교무위원회의 회의 제안 및 자료정리
 -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12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(관련 위원회로 업무 이관) (2016.9.7.신설),(2022.5.31.개정)
 - 외국대학교 교류 현황
 - 정관, 학교규칙 및 운영 규정
 -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
 - 학교 발전계획 및 학부 특성화 계획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
 - 대학회계 예산 관련 사항
 - 등록금 현황 및 산정근거
 -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
- 13. 부처별 업무 분장 및 조정
- 14. 대외홍보(디아코니아사업단으로 이관) (2022.5.31.개정)
 - 대학 종합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업무
 - 대외홍보 및 광고업무

- 국내외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보도자료 배부 업무

제3조의2(미래교육혁신처) (2022.11.23.기획조정처로 업무이관) (삭제) (2020.9.18.신설),(2022.5.31.개정),(2022.11.23.삭제)

[제목변경 2017.8.31.]

제4조(교학처) 교학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(2012.2.16.개정),(2016.3.14.개정),(2016.9.7.개정),(2018.8.24.개정),(2019.05.27.개정)

1. 학칙

- 학칙변경 제안 (2016.9.7.개정)

2. 학사계획

- 학사일정 수립 및 시행
- 학사 운영 및 학사 운영제도 개선 (2016.9.7.개정)

3. 교육과정 (2018.2.27.개정)

- 교육과정 관리, 운영
- 교육과정위원회 업무
- 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 (2016.9.7.개정),(2018.2.27.개정)
- 계약학과 관리 (2016.9.7.개정)

4. 수업관리

- 수강신청
- 강의계획서 배부
- 수업관리 엄정성 확보 및 관리 (2016.9.7.개정)
- 수업평가 및 결과 분석 (2016.9.7.개정)
- 현장실습 기획 및 운영 (2016.9.7.개정)

5. 시간표 편성

- 시간표 작성 및 배부
- 전임교원 책임시간 관리

6. 출강관리

- 강사 임용 및 출결 확인 (2019.8.28.개정)

7. 시험관리

- 고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
8. 성적승인

- 성적보고서 접수 및 확인
- 성적 이의신청 접수 및 정리

9. 학적관리

- 성적불량자 학사경고

- 제적처리(자퇴, 학사경고, 징계 등)
 - 휴학, 복학, 재입학 관련 업무
 - 학사보고(교육인적자원부)
 - 학적부 작성 및 보관
 - 제 증명 발급(학생, 수료자, 졸업생 등)
 - 학력조회 및 회신
 - 편입생 학점인정
 - 편입학 여석판단
 - 졸업예정자 사정업무
10. 졸업 및 학위등록
- 교육인적자원부 학위등록
 - 학위증 수여
11. 삭제 (2017.1.26.)
12. 연구
- 학술연구비 지원 및 관리업무
 - 교원 연구에 관한 업무
 - 교원 연구실적 심사운영 및 관리업무
 - 교수개발 및 연수 관리업무
 - 학술진흥위원회 업무
13. 대외교류 및 사회봉사
- 교원 및 학생의 대외교류 및 사회봉사 관련 업무
14. 교수회의
- 교수회의 개최
 - 교수회의 자료정리
15. 교원업적평가
-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무
 - 강의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16. 수업평가 (2016.3.14.개정)
- 수업평가자료 정리 및 관리 (2016.3.14.개정)
 - 수업평가위원회 업무 (2016.3.14.개정)
17. 교원인사
- 교원 임용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관리
 - 교원 승진, 재계약, 유휴직, 복직관리
 - 교원인사위원회 업무
 - 교원 인사발령 대장 작성 및 관리
 - 교원출장관리

18. 학점교류

- 학생학점교류

19. 병사

- 학적보유자 명부작성, 학적변동 통보(병무청)

20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 (2016.9.7.신설)

- 성적평가 결과(성적평가 분포)
- 모집요강 및 학생 선발·총원·탈락 현황
- 교육과정 및 강좌 개설 현황
- 전임교원 현황 및 관련 실적
- 연구장비 운영 현황
- 장학금 수혜 현황
-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등 대학원 관련 사항

21. 학사 관련 지도 및 상담 (2018.2.27.신설)

22. 입학업무

- 모집요강결정 및 제작, 배포
- 입시관련 홍보 및 광고
- 원서교부, 접수, 합격자 발표
- 신입생 보고(교육과학기술부)
- 외국학생 입학허가서 발급
- 입시자료 및 문서의 보관
- 입학관리위원회 업무
- 입학감사위원회 업무
- 입학사정위원회 업무

23. 학생복지 및 지도

- 학생회 지도 업무
- 학생복지에 관한 계획 및 시행
- 학생상담(진학, 취업, 신상 등)
- 학생자치기구(동아리) 운영지도
- 동아리 지도교수 임명
- 동아리 등록 및 승인
- 학생지도위원회 업무
- 대학 축제 지원 관련 사항 (2016.9.7.개정)

24. 학생상벌

- 학생징계 및 징계해제
- 표창대상 추천
- 학생지도위원회 업무

25. 장학

- 장학생선발 및 지급
- 학자금융자추천
- 근로 장학생 선정 및 배치
- 장학위원회 업무
- 장학금 현황

26. 학생지원활동 (2016.9.7.신설),(2017.8.4.개정)

- 학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- 학생 학습역량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27. 대학 정보공시 총괄 관리 (2016.9.7.신설),(2017.8.4.개정),(2023.08.02.개정)

28. 마일리지 프로그램 (2017.8.4.신설)

- 마일리지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
- 마일리지 프로그램 관리

29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0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1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2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3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4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5. 삭제(2019.07.23.삭제)

36. 대외홍보 (2018.12.12.개정),(2020.3.11.개정)

- 입시홍보 지원 업무
-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시스템 업무
- 대학연혁 기록 관리

제4조의1(입학처) [본조신설 2017.1.26.],(교학처로 이관. 2018.8.24.개정)

제5조(학생처) (2016.3.14.개정),(2016.9.7.개정),(교학처로 이관. 2018.8.24.개정)

제6조(총무처) 총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(2012.2.16.개정),(2016.3.14.개정),(2016.9.7.개정)

1. 직원인사

- 직원 임용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관리
- 직원 임면 제청 및 승진, 전보
- 직원보직임면 (기획조정처로 이관. 2020.3.11.개정)
- 직원 인사발령 대장 작성 및 보관
- 직원 정기승급 및 호봉 책정
- 직원 고과평정 운영
- 직원 인사위원회 업무

- 1-1. 급여 및 제 수당 제안
 - 직원 및 교원의 급여 및 제 수당 제안
2. 보안
 - 보안업무 지도 및 관리
 - 비밀문서 보관 및 통제
3. 당직 및 숙직
 - 당직근무 수립 및 시행
 - 당직 및 일직확인 및 감독
4. 연금
 - 교직원 임면 및 신분변동 신고
 -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
 - 교직원 연금 대여 및 복지업무
5. 의료보험
 - 교직원 건강진단 업무
 - 교직원 임면 및 신분변동 신고
 - 교직원 피보험자 자격관리
6. 복무
 - 직원근태 및 기강파악
 - 직원근무시간 조정
 - 직원출장명령
 - 직원휴가실시
 - 직원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
7. 상벌
 - 교직원 수상자 선정 및 표창
 - 직원징계
8. 회계 및 결산
 - 결산지침 수립 및 결산보고
 - 일계표 작성
 - 위탁회계의 자금관리
 - 현금 유가증권의 보관, 관리
 - 각종 회계관리 장부 작성, 관리
 - 결산자문위원회 업무
9. 이사회
 - 이사회 관련 업무(법인으로 이관)
10. 자금관리
 - 일일자금의 계획 및 집행

- 납입금 수입 및 각종 기부금 수입
- 위탁회계 세입징수
- 11. 수입 지출
 - 각종 지출결의
 - 제세공과금 납부
- 12. 세무
 -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주민세 업무
 - 연말정산 업무
- 13. 문서관리
 - 문서 수발 및 분류
- 14. 제증명 발급
 - 제증명 발급업무
 - 교직원 신분증 발급
- 15. 우편물
 - 각종 우편물 접수, 배부, 발송
- 16. 행사 의전
 - 학교행사 지원
 - 학교행사 의전 및 섭외
- 17. 물품구매
 - 물품(비품, 소모품)구매계약
 - 용역계약 업무
 - 입찰위원회 업무
 -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·관리 업무 (2016.9.7.신설)
- 18. 시설
 - 시설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
 - 시설물 유지, 관리
 - 공사감독 및 관리
 - 건축물 개보수
 - 시설물 사용 승인
 - 건물의 공간배정 및 조정
 - 외부인 학교시설 사용 승인 업무 (2016.9.7.신설)
- 19. 물품관리
 - 물품수급계획
 - 물품 등록번호 부여 및 재물조사
- 20. 방화관리
 -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교육 시행

- 각종 소방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개보수
- 21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 (2016.9.7.신설)
 - 대학회계 결산 및 적립금, 기부금, 교육비 관련 사항
 - 등록금 납부제도 및 입학전형료 관련 사항
 - 문서 관리 체계 및 현황
 - 기숙사 수용 현황
 - 안전관리 현황
 - 직원 현황
- 22. 국고 관리 및 집행 (2019.10.11. 신설)
 - 국고 지출
 - 국고 제세공과
 - 국고 관련 제반 업무
- 23. 대외홍보 (디아코니아 교양대학으로 이관. 2020.4.1.개정)
 - 홈페이지 운영 및 기획 총괄
- 24. 전산(정보화)위원회 업무
- 25. 컴퓨터실 운영관리
- 26. 대학 전산망 관리 업무
- 27. 학사행정 전산정보관리업무
- 28. 대학전산관련 개발업무
- 29. 입시전산관련업무
- 30. 교수의 전산연구 지원업무
- 31. 기타 위 사항에 부가되는 사항
- 32. 전자결재 등 그룹웨어 운영 및 관리 업무

제7조(문헌정보관) 문헌정보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(2018.8.24.개정),(2020.3.18.개정),(2020.4.28.개정)

1. 수서정리
 - 자료선정 및 구입
 - 구입 예정자료 복본 조사
 - 자료 폐기
 -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
 - 자료 분류
 - 자료D/B구축 및 관리
 - 도서관부 작성 및 관리
 - 자료 열람실 운용업무
 - 대출 및 반납

- 장서점검, 분실조서 처리
- 2. 자료운용
 - 국내외 자료 관리, 서비스
 - 참고도서, 논문자료의 관리
 - 정기간행물 통계
- 3. (전산실로 이관) (2012.2.16.개정)
- 4. 시설관리
 - 멀티미디어실 운영 관리
 - (전산실로 이관) (2012.2.16.개정)
- 5. 문헌정보관운영위원회 (2016.9.7.개정),(2020.4.28.개정)
 - 문헌정보관운영위원회 업무
- 6. 문헌정보관 발전계획 (2016.9.7.신설),(2020.4.28.개정)
 - 문헌정보관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
 - 문헌정보관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·조사
- 7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 (2016.9.7.신설),(2020.4.28.개정)
 - 장서 보유 및 문헌정보관 예산 현황
- 8. 전산, 정보
- 9.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
- 10. 삭제(2020.2.5.)
- 11. 삭제(2020.2.5.)
- 12. 삭제(2020.2.5.)
- 13. 삭제(2020.2.5.)
- 14. 삭제(2020.2.5.)
- 15. 삭제(2020.2.5.)
- 16. 삭제(2020.2.5.)
- 17. 삭제(2020.2.5.)
- 18. 삭제(2020.2.5.)
- 19. 대외홍보 (2018.12.12.개정),(2020.3.11.개정)
 - 총회 및 동문회 후원 관련 업무 (교목처로 이관)
 -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업무 (교목처로 이관)
 -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시스템 업무 (교학처로 이관)
 - 대학연혁 기록 관리 (교학처로 이관)
- 제7조2(대외홍보처)** (2016.3.14.신설),(2016.9.7.개정),(2017.8.31.개정),(교목처로 이관.
2018.8.24.개정)
- 제7조3(감사실)** (2020.3.18.신설)

1. 감사업무 (2020.3.18.신설)
 -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 수립·조정
 - 본부행정부서, 각 부속·부설기관에 대한 감사
 - 감사결과의 처리
 - 법인 감사 지원
 - 기타 각종 감사 관련 업무
2. 제 위원회 모니터링 업무 및 연보 발행 업무 (2020.3.18.신설)

제 3 장 대학원

제8조(신학대학원) (교무처로 이관. 2012.2.16.개정),(2016.3.14.개정)

제 4 장 부속기관

제9조(출판홍보실) 삭제 (2017.1.26.)

제9조의2(출판부) 출판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교재 및 학술도서의 출판
2. 교내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
3. 영상, 음향, 전자 저작물 등
4. 간행도서의 관리 및 판매
5. 대외홍보 (2020.2.5.신설)
 - 학교신문 제작과 배포
 - 요람제작 및 배포
 - 교내 출판물 및 관련 홍보자료 보존 및 관리
 - 대내외 출판, 유인물 수집 및 보관

[본조신설 2017.1.26.]

제10조(생활관) (2016.3.14.개정),(교목처로 이관. 2018.8.24.개정)

제11조(학보사) 삭제 (2016.9.7.)

제11조의2(방송국) 루터대학교 방송국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. (2016.3.14.개정)

제11조의3(학보사) 루터대학교 학보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

1. 학보 정기 발간
 - 홈페이지 학보 탑재
2. 입학 관련 홍보 업무지원
 - 홍보 영상 제작
3. 운영위원회 및 편집지도위원회 운영

[본조신설 2017.2.17.]

제12조(평생교육원) (2016.3.14.개정)

1.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2. 강좌의 개설 및 정원관리
3. 학사일정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
4.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개강식, 수료식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6. 수강료 및 강사료 계산
7.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8. 강의시간표 작성
9. 교육기자재 관리
10. 수업의 진행
11. 출강부 관리
12. 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
13. 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14. 수료증 및 수료대장에 관한 사항

제12조의2(전산실) (2016.3.14.개정),(2016.9.7.개정),(2017.8.31.개정),(문헌정보처로 이관. 2018.8.24.개정),(총무처로 이관. 2020.3.18.개정)

제12조의3(산학협력단) (2016.3.14.개정),(2017.1.26.개정)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
4. 산학관련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6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7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
8. 대학 내에 설치·운영되는 기업·연구소 기타 산학협력기관에 대한 지원
9. 대학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 관리
10.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12조의4(언어치료센터) (2016.3.14.개정)

제12조의5(루터상담소) 삭제 (2016.9.7.)

제12조의6(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) (2016.3.14.개정),(2020.5.20.개정)

1. 교수의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 (2017.1.26.신설)
2. 학생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 (2017.1.26.신설)
3. 교육매체 연구개발 및 정보 제공 등 관리 및 운영 업무 (2017.1.26.신설)
4. 기타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업무 (2017.1.26.신설)

5.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업무 (2020.9.18.신설)

제12조의7(인성교육원) (2016.3.14.개정)

제12조의8(국제교육원) (2016.3.14.개정)

제12조의9(취·창업지원센터) [제목개정 2020.9.18.],[제목개정 2023.08.02.]

1. 진로 및 취·창업교육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운영
2. 취·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예산 관리
3. 취·창업지원센터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
4. 취·창업관련 자료 홍보 및 안내
5. 취·창업동아리 지원
6. 전공별 취업활동 지원 (2020.2.25.개정)
7. 기타 취·창업관련 업무
8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 (2017.8.4.신설)
 -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
 - 취·창업 교육 및 지원 현황

[본조신설 2016.9.7.]

제12조의10(보건실)

1. 보건실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
2. 보건실 규정 개·폐
3. 보건실 관련 자료 홍보 및 안내
4. 보건실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
5. 보건실 교육 및 지원
6. 비상 응급대처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지원
7. 기타 보건실 관련

[본조신설 2017.1.26.]

제12조의11(장애학생지원센터)

1. 장애학생지원센터 계획의 수립과 운영
2.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
3. 장애학생 및 도우미의 관리
4. 장애학생의 신상자료 관리
5. 무장애 환경구축 및 장애학생의 편의 지원
6.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지원
7. 장애학생의 고충처리 및 상담
8. 장애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9. 교수·학습 지원 보조 및 프로그램 개발
10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
11. 대학 정보공시 및 관련 통계 업무 (2017.8.4.신설)

-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

[본조신설 2017.1.26.]

제12조의12(학생상담지원센터)

1.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 상담
 - 개인 심리 상담
 - 집단 상담
 -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
2. 양성평등교육 제공
 - 학생 대상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교육
 - 교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
 -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
 - 성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
 - 성 관련 피해 개인 심리 상담
 - 성 관련 피해 집단 상담
 - 성 관련 피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제공
3. 종합인력 프로그램 실시
 - 상담심리학전공 실습 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 연계 (2020.2.25.개정)
 - 상담 전공 콜로키움 프로그램
4. 학생생활실태조사
5. 기타 본 상담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 -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정신건강 심리 검사 및 적응 프로그램
 - 대학원 입시 인성 심리 검사

[본조신설 2017.1.26.]

제12조의13(디아코니아사업단) (디아코니아 센터로 업무이관)(2022.11.23. 개정) (삭제)
(2017.1.26.신설),(2022.11.23.삭제)

제12조의14(교육역량혁신원) 삭제 (2017.8.31.)

제12조의15(교양기초교육원) (2017.8.17.개정),[본조신설 2017.2.17.],[제목개정 2017.6.9.],[교학처로 이관. 2018.8.24.개정)

제12조의16(대학성과관리센터) 대학성과관리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(2022.11.23.개정)

1. 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교육 성과평가 및 질 관리 업무
3. 학생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육성과 관리
4.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관리
5. 강의평가 연구분석 [본조신설 2017.6.9.]

제 5 장 총장 직속기관

제12조의17(루터대학교 예비군소대) 예비군소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 (2017.2.17.개정)

1. 예비군 소대 운영
 - 예산 편성 집행
 - PC 및 전산기기 보안 관리
2. 예비군 소대장 업무
 - 임무수행철, 직장방호계획 작성 및 관리
 - 직장예비군방위협의회 업무
3. 편성 및 자원관리
 - 예비군 학적변동 시 전·출입
 - 예비군 부대 조직 관리
 - 예비군 편성카드 작성 관리
 - 비상소집망 최신화
4. 교육 및 훈련
 - 향방기본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
 - 보충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
 - 향방작계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
5. 국방동원정보체계 업무
 - 일일업무일지 작성
 - 부대 운영 및 행정 관리

[본조신설 2017.1.26.]

제12조의18(혁신지원사업단) 혁신지원사업단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 (2019.2.19.신설)

1. 혁신지원사업 운영
 - 예산 편성 집행
2. 혁신지원사업 감사
3. 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작성
4. 기타 제반사항

제12조의19(빅데이터운영(IR)단) (삭제) (2019.2.19.신설),(2022.11.23.삭제)

제12조의20(루터미래교육원) [본조신설 2020.9.18.], [삭제 2022.5.31.]

제12조의21(미래교육과정센터) (삭제) (2020.9.18.신설),(2022.11.23.삭제)

제12조의22(디아코니아센터) 디아코니아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사회봉사
2. 국제협력

3. 교육과정

[본조신설 2020.9.18.]

제12조의23(성인학습지원센터) 성인학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
2. 성인학습 일 학습 병행에 관한 업무 지원, 학업 상담 및 지원
3. 성인학습자 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
4. 성인학습자 교수학습 방법 운영 지원
5. 교육품질 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 교육 환류 지원 지원
6. 성인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이해 제고 및 동참 유도 지원
7. 성인학습 관련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원
8.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지원

[본조신설 2022.11.23.]

제 6 장 부설연구소

제13조(루터연구소) 루터 연구소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 (2016.3.14.개정)

1. 루터 및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논문집(루터연구) 간행
2. 루터 및 종교개혁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
3. 관련자료 수집 및 제공
4. 연구발표 및 강연회 개최
5. 우수한 연구 작품의 포상
6. 장려금 또는 특별연구비 지급
7. 국내 및 해외 연구소와의 자료 교환
8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14조(중국선교연구소) 삭제(2016.9.7.)

제15조(사회복지연구소) 삭제 (2016.9.7.)

제16조(언어인지치료연구소) 삭제 (2016.9.7.)

제17조(루터상담연구소) (2016.3.14.개정),(2017.1.26.개정)

1. 종합실습 프로그램 실시
 - 상담심리학과 실습교육 및 연계프로그램
 - 집단상담프로그램 보조진행 교육 및 실습
2.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·심리검사 및 교육프로그램
 - 상담학과와 연계, 지역주민에게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
 -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,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
3. 연구지 발간 및 간행물 「섬김과 대화」 출판

4. 대외홍보처와 연계·협력하여 국내 지역루터교회 및 해외 루터란 대학과의 연계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 7 장 디아코니아교양대학

제18조(디아코니아교양대학) 디아코니아교양대학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 (2019.07.

23.신설)

1.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관리 및 지원
2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정
3.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·개발
4.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
5. 교양 교과목 편성
6. 편성에 따른 강사 선임
7. 기타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
8.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(2020.4.1.신설)
9. 온라인 홍보 관련 업무 (2020.4.1.신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기획조정처 관련 규정은 해당 부처 폐지 이후 소급하여 반영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